

부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2가단3120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1)의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 9. 9. 체결된 채권양도 계약을 76,208,80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C에게 별지 목록(1)의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라.

2. 가. 피고 B과 C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26.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1. 7. 26. 접수 제178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1) 원고는 (주)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피보증인을 E은행(동래지점)으로 하여, ① 2017. 4. 7. 보증금액 2억 7,000만원, ② 2018. 3. 20. 보증금액 2,400만원, ③ 2020. 9. 23. 보증금액 2억 3,750만원의 각 신용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당시 위 회사의 대표자인 C(이하 ‘채무자’라고 한다)는 위 각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는 E은행(동래지점)으로부터 ① 2017. 4. 7. 3억원, ② 2018. 3. 20. 3,000만원, ③ 2020. 10. 8. 2억 5,000만원의 자금을 각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나. 채무자의 각 거래행위

(1) 피고 A의 대여금

채무자는 2021. 4. 9. 피고 A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차용하였다.

(2) 채무자는 2021. 4. 28. F, G(각 1/2)에게 부산 동래구 H아파트 I호를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3)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1. 7. 26. 딸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1처분행위’라고 한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함으로써 보증사고를 야기하자, J은행은 2021. 9. 8.경 원고에게 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라. 채무자의 2차 처분행위

채무자는 2021. 9. 9. 피고 A에게 2021. 4. 9.자 대여원리금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대금 채권[별지 목록(1)의 제1항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잔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분행위'라고 한다).

마. 원고의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21. 12. 3. E은행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279,366,1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은 280,566,745원(대위변제금 279,366,115원 + 미수위약금 798,440원 + 법적절차비용 402,19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79,366,115원에 대한 2021. 12. 3.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았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바. 공탁

(1) 원고의 가처분

원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1. 10. 6. 피고 A를 상대로 '이 사건 잔대금 채권의 추심 및 처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 법원 2021카단53141)을 신청하여, 2021. 10. 12. 그 인용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21. 10. 15. 제3채무자인 F, G에게 도달하였다.

(2) 이에 F, G은 2022. 1. 17. 이 사건 잔대금 76,208,807원을 변제공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2년금158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2호증, 을가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피고 B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이 사건 1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피고 A 부분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구상금의 근거가 되는 각 신용보증 계약이 존재하였던 점, 당시 채무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보증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1처분행위 후 불과 1개월 여만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바로 그 다음날 이 사건 2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점, 원고는 위 보증사고 통지를 받은 후 E은행에 예정대로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상금도 이 사건 2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① 채무자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무렵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잔대금 채권은 당시 사실상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2처분행위는 차용원리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2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2처분행위 당시 위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 A 스스로도 ‘채무자가 당초 열흘이면 충분하고, 늦어도 20일 내에는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5개월이 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 사건

2처분행위 당시 채무자에게 “왜 나를 속였느냐?”, “회사 사정이 그렇게 어렵느냐?”, “다른 채무는 없느냐?” 등으로 추궁하였다’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 A는 채무자의 자력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 A는 현금 대신 채권을 양도받는 이례적인 채권회수 방법을 선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을가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당시 피고 A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상회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F 등의 변제공탁에 따라 이 사건 잔대금 채권에 갈음하게 되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 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별지

목 록 (1)

1. F에 대한 청구금액: 38,104,404원,
G에 대한 청구금액: 38,104,403원.
F, G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잔대금 반환 채권.
2. F, 소외 G이 공탁한 부산지방법원 2022년 금제158호 공탁금 76,208,807원에 관하여 피고 A이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채권. 끝.

목 록(2)

1. 사천시 K 전 60㎡
2. 사천시 L 대 645㎡
3. 사천시 M 전 783㎡. 끝.

